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간의 양해각서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이하 “LACAC”이라 한다.)와 대한민국 국토교통부(이하 “MOLIT”이라 한다.)는;

민간항공의 중요성과 민간항공이 대한민국과 LACAC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발전 및 상호교류에 크게 기여하는 바를 유념하고;

대한민국과 LACAC 회원국 간의 증가하는 항공교통량을 염두에 두며;

대한민국과 LACAC 회원국의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한 민간항공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미 있는 협력관계 구축을 희망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1. 정보와 협의

국토교통부와 LACAC은 대한민국과 중남미의 민간항공발전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한다. 다만, 당해 정보의 교환으로 인하여 양측이 기밀로 간주하는 사안 혹은 양측 누구에게도 이해관계가 없는 사안은 제외된다.

2. 협력 범위

국토교통부와 LACAC은 각각의 권한 내에서 항공안전, 보안, 환경 및 CNS/ATM 분야 등 제반 국제항공분야에서 협력하며 협력내역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이에 국한되지는 아니한다.

1. 정보교환
2. 국제행사 및 회의
3. 재원발굴 협조
4. 종사자 교육
5. 공동협력사업 발굴

3. 협력방법

사무국

1. 동 양해각서의 이행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LACAC의 지정 연락관(이하 “사무국”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a.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항공정책실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30103)
전화) 82-44-201-4214, 팩스) 82-44-201-5624

b. LACAC
사무국
Apartado Postal 27032, Lima, Peru
전화) 51-1-422-6905/422-9367, 팩스) 51-1-422-8236

2. 양측은 필요시 다음의 방법을 통하여 협의체제를 구축 및 유지한다.

- 1)서한 및 문서 교환
- 2)상호 방문
- 3)회의 초청
- 4)필요시, 상호 협의 및 조정

실행수준

양측의 간부급 대표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대측 회의에 참석한다. 양측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총회 등 주요 국제민간항공 행사·회의가 개최되기 이전에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와 LACAC의 회원국이 개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할 경우에는 LACAC에 통지한다.

이행협의

동 양해각서에 따른, 특정 사업 및 사업 이행을 위한 협의에 대한 세부사항은 이 양해각서의 부속서에 정한다. 양측이 서명한 부속서는 양해각서의 일부로 구성된다.

4. 재 정

양측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동 양해각서 조항의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양측이 각자 부담한다. 동 양해각서에 의한 모든 활동은 양측의 자금 및 인력의 가용범위 내에서 추진한다.

5. 연락체계

동 양해각서와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LACAC간의 의견교환은 각각의 사무국을 통하여 진행한다.

6. 의견교환

국토교통부와 LACAC은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진행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매3년 마다 회의를 개최한다. 이러한 회의는 대한민국 세종시 소재 국토교통부 본부 또는 페루 리마 소재 LACAC 본부에서 교차로 개최하거나, 양측이 달리 정한 장소에서 개최한다.

7. 유효기간

동 양해각서는 무기한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양측은 6개월 이전에 서면을 통해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동 양해각서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한 쪽에 의해 동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동 양해각서에 의해 진행중인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양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8. 개 정

국토교통부와 LACAC은 동 양해각서를 이행함에 있어 양해각서 조항에 부합하는 부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동 양해각서는, 필요 시, 상호 동의에 의해 개정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양측은 상대방이 제안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호의적으로 검토한다. 이러한 개정 또는 수정사항은 문서화 되어 양측이 서명한 경우에 효력을 발한다.

9. 이 견 해 결

동 양해각서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발생하는 이견은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분쟁의 해결을 목적으로 제3자 또는 법정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10. 효력발생

동 양해각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LACAC 의장이 서명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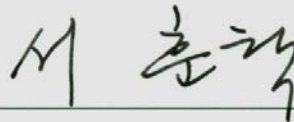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과 LACAC 의장은 2016년 ___월 ___일 몬트리올에서 영어, 한국어, 스페인어 3부에 서명하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유효하다.



Carlos Velasquez Monge

의장
LACAC

2016. 30 / 09 .



서 훈 택

항공정책실장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2016. 30 / 09 .

